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5. 9. 2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05호로 2025년 9월 8일 이성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신규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 확보와 행정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지원절차 (안 제6조)
- 다. 건축위원회의 자문 (안 제7조)
- 라. 공개 공지 등의 유지 관리 의무와 책임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 9. 3.~2025. 9.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는 민간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하고자 제정(2009. 4. 23.)되었음.
- 그러나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16년간 「건축법」의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시행 등 관련 상위법령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현행 조례에 규정된 ‘건축디자인위원회’가 현재는 ‘건축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기능은 ‘건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현행 위원회 운영체계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제1호는 누락된 “제1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변경된 위원회 명칭에 맞게 개정 (건축디자인위원회→건축위원회)
- 안 8조 및 안 별지 제1호서식은 본 조례 제정 당시 「건축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운영 실태와 맞지 않았던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건축디자인위원회’ 명칭을 실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로 개정함으로써 조례 규정과 실제 운영체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 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방법·절차 및 점검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